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7. 25.(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7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7월 21일

-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2년) 삭제(안 제6조)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조정(안 제13조, 제21조)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작품 출품제한 규정 삭제(안 제26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를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조항과 기존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 2차례만 연임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임. 또한, 도내 문화예술인력을 보다 넓게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26조 2항의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위원의 작품출품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현행 무제한에서 2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견이 없음.
- 현재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원은 50명 내외로 구성(조례 제21조)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에는 10여명 내외로 선정(조례 제24조)하고 있으나, 조례 제26조 제2항에는 모든 심의회위원의 미술작품출품을 제한하고 있음.
-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심의회위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며, 조례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에 선정된 심의회위원(10여명 내외)의 기피, 제척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작품 심사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
----------	---

제출연월일 : 2014년 7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2년) 삭제(안 제6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지정 취소 조치가 없을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지침(문체부)에 명시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임규정 조정(안 제13조, 제21조)
 - 문화예술, 건축물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의 성별 균형 고려 위촉, 연임규정(무제한 → 두 차례) 조정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의 작품 출품제한 규정 삭제(안 제26조제2항)
 - 심의위원 미술작품 출품제한 규정으로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미술작품 심의위원들의 창작활동 범위가 축소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역적”을 “지역과 성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정유효기간 등)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제13조(구성 및 임기 등) ① ~②(생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중에서 <u>도지사가 위촉한다.</u>	제13조(구성 및 임기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u>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④.....	<u>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①(생략)	②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련담당국장, 건축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되 <u>지역적</u>	제21조(구성 및 임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u>지역과 성별의</u>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③.....	<u>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제26조(위원의 의무) ①(생략)	② 심의위원은 재직기간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제26조(위원의 의무) ①(현행과 같음)	< 삭제 >	
③~④(생략)	출품을 제한한다.	②~③(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